개선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DB손해보험㈜

2. 조치일 : 2023. 9. 6.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개선사항 5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운영 불합리

검사착수일(2023.4.12.) 현재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32개의 추출기준(STR Rule)을 운영하고 있으나

추출기준이 포섭하는 의심거래의 범위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추출기준 정비시 기존 임계치 등의 오설계만 수정할 뿐 새로운 의심거래 유형의 추가는 1건에 그치는 등 운영이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회사의 영업형태 및 업무범위를 포괄하도록 추출기준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체계 운영 미흡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하 “FIU”)에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FIU 보고완료 여부나 보고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절차가 없고, 보고책임자의 검토 및 결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내부결재 및 FIU 보고일자를 전산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보고책임자 결재를 내실화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체계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3) 고객위험평가모형 운영 불합리

2018년 고객위험평가모형을 구축하고, 신규 가입시 모형(Initial 모델)과 기존고객에 대한 모형(Behavior 모델)으로 구분하여 고객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으나

위험평가요소나 세부 기준 변경시 적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되었는지 여부, 변경의 필요성(사유) 및 변경 전후 내역 등에 대한 관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고객위험평가모형 구축 이후 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고객위험평가 변경과 관련된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위험평가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람

(4) 고객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미흡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및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 등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고객확인 정보 관리가 필요함에도

외국인의 고객명, 영문고객명, 국적 등이 고객확인을 통해 실제 확인한 정보와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되거나 AML 업무시스템 화면상 부적정하게 표시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고객확인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오입력 사례 및 전산 오류 등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람

(5)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내규 미흡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업무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매뉴얼」 등 내규를 마련하여 운영 중이나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제외 사유의 적정성 점검, 전사적 위험평가, 신상품 위험평가, 독립적 감사 등의 구체적 절차 및 기준을 내규에 마련하지 않아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구체적 운영기준 및 절차 등을 내규에 반영하여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람